

「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」 및 「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」 선정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는 「지역특구법」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, 「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」(22.8)에 따라 '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4년 7월 1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 선정 계획

지정목적 :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

※ 「지역특구법」 제1조 및 “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”(23.5.8, 대외경제장관회의)

선정규모 : 3개

※ “2024년 경제정책방향”(24.1.4)

신청자격 : ‘비수도권 시·도지사’ 또는 ‘비수도권 시장·군수·구청장’

※ 「지역특구법」 제7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

주요 지원사업 : 해외실증, 해외인증 지원, 국제공동R&D, 시물레이션 실증, 책임보험

- **주요 선정기준** : ①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, ② 지역경제 기여 계획의 우수성, ③ 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 기대효과, ④ 글로벌 진출계획의 적정성

□ **평가기준**

① **계획의 우수성 (50%)**

-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우수성
-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계획의 실현가능성
-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정부·지역의 지역 발전전략,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
- 지역 산업,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의 적정성
- 실증특례 부여,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개선 전략의 타당성
-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, 다양성 및 확장성
-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

② **지방자치단체 역량 (30%)**

-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, 대학,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·창조경제혁신센터·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
- 특구 운영, 실증 관리,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
-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
-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

③ **기대효과 (20%)**

- 특구의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
-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

□ 향후계획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선정 공고 (7.1) | ▷ 개요, 선정 계획, 제출 서류 등 공고내용 안내 (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, 중소기업진흥공단·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) |
| ↓ | |
| 설명회 (7월 1주) | ▷ 지자체 대상 특구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·응답 * 세부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|
| ↓ | |
| 특구계획서 접수 (10.21 ~ 10.31) | ▷ 신청 공문,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신청서 (붙임2 참조), 사업계획서 (붙임3 참조) |
| ↓ | |
| 서면평가 (11.1~11.30) | ▷ 발표평가 대상 확정 |
| ↓ | |
| 후보지역 선정 (12월 중순) | ▷ 발표평가를 통해 후보지역 선정 및 익일 발표 |
| ↓ | |
| 분과위원회 검토 ('25.1월 ~ 2월) | ▷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계획 확정 |

※ 「지역특구법」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'25년 상반기 중 동법 제 7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

2.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계획

□ 지정목적 :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

※ 「지역특구법」 제1조

□ 후보특구 개요 : 지자체가 제안한 우수한 특구계획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기획 및 부처협의 등을 지원

□ 후보특구 선정 규모 : 6개 내외

※ 선정된 후보특구에 대해서는 기획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

□ 신청자격 : '비수도권 시·도지사', '비수도권 시장·군수·구청장' 또는 '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'

※ 「지역특구법」 제72조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3호

□ 주요 지원사업 : 지역의 연구기관·대학·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실증R&D, 사업화 지원 및 책임보험 등

□ 주요 선정기준 : ①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, ② 지역경제 기여계획의 우수성, ③ 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

□ 평가 기준

① 계획의 우수성 (50%)

-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우수성
-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계획의 실현가능성
-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정부·지역의 지역 발전전략,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
- 지역 산업,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의 적정성
- 실증특례 부여,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개선 전략의 타당성
-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, 다양성 및 확장성

② 지방자치단체 역량 (30%)

-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, 대학,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·창조경제혁신센터·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
- 특구 운영, 실증 관리,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
- 사업화 지원계획
-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초광역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지자체 간 협력, 인프라 연계

③ 기대효과 (20%)

- 특구의 운영을 통한 **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** 등 기대효과
- 특구 종료 후 **혁신 클러스터**로의 발전 가능성

□ 향후 계획 (※ '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프로세스는 [붙임1] 참조)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선정 공고 ('24.7.1) | ▷ 개요, 선정 계획, 제출 서류 등 공고내용 안내 (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) |
| ↓ | |
| 설명회 ('24.7월 1주) | ▷ 지자체 대상 특구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·응답 * 세부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|
| ↓ | |
| 특구계획서 접수 ('24.8.20 ~ '24. 8.30) | ▷ 신청 공문,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 (붙임4 참조), 사업계획서 (붙임5 참조) |
| ↓ | |
| 후보특구 선정 ('24.9월) | ▷ 대면발표평가 |
| ↓ | |
| 특구계획 기획지원 ('24.10월 ~ '24.12월) | ▷ 규제자유특구 : 1억원,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: 2억원 |
| ↓ | |
| 분과위원회 검토 ('25.1월 ~ 2월) | ▷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계획 선정 |

※ 「지역특구법」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'25년 상반기 중 동법 제 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

3. 제출

□ 제출 기간

- 글로벌 혁신특구 : '24. 10. 21. (월) ~ '24. 10. 31. (목)
- 규제자유특구·초광역 규제자유특구 : '24. 8. 20. (화) ~ '24. 8. 30. (금)

□ 제출 방법 : 신청공문 (전자문서), 후보특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전자문서에 첨부*하여 중소벤처기업부**로 제출

* 특구 신청서, 특구계획서는 pdf 파일로 첨부

□ 문의처

| 구 분 | 담당기관 (부서) | 담당자 및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글로벌 혁신특구 | 중소벤처기업부 (특구정책과) | 원미연 사무관 (044-204-7204) |
|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지역산업성장처) | 서진호 부장 (055-751-9844) |
| 규제자유특구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| 중소벤처기업부(특구운영과) | 윤상요 사무관 (044-204-7205) 김형철 주무관 (044-204-7596) |
|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(규제혁신지원실) | 백승우 책임연구원 (02-6009-3722) |

- ※ 붙임 : 1. '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
2.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신청서
3.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서
4.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
5. 규제자유특구 계획서

붙임 1

'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

| 절차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1 후보특구 공고 (중기부, '24.7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모집대상)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특구 모집 공고 - 초광역규제자유특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 |
| 2 특구 계획서 수립 (지자체, ~'24.8월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①지역 전략·혁신분야*, ②실증사업 (규제특례 등), ③총괄주관기관 등이 포함된 특구 계획서를 중기부에 제출 (50p 내외) * 지역혁신주체 (연구기관, 앵커기업, 경자구역 등)로 '과제기획TF' 구성 및 기획 추진 |
| 3 후보특구 선정 (중기부, '24.9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기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,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서 평가 및 후보특구 선정 (6개 내외) |
| 4 특구사업자(후보군) 공모(지자체, '24.9월~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자체는 선정된 후보특구 계획을 공개하여, 기업·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(후보군)를 공개 모집 |
| 5 특구 상세기획 (지자체, '24.10월~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 지자체 및 총괄 주관기관은 선정된 후보특구 상세 기획 |
| 5-1.과제기획 점검 및 부처협의 (중기부, '24.10~12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기획점검) 중기부는 기술, 균형발전, 규제 분야 등 전문가로 특구별 자문단을 구성하여, 지자체의 특구 기획 상황 수시 점검 · (부처 협의) 특례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에 필요한 안전성 입증 항목 및 각 항목별 정량목표 등에 대한 규제부처 의견 제출 |
| 5-2.특구계획서 완성 (지자체, ~'24.12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·전략분야, 실증사업 및 특구사업자*, 총괄주관 기관·특구 운영체계 등 계획 완성 * ※ 지자체는 실증 R&D 등 재정지원 대상을 평가를 통해 선정 |
| 6 특구계획서 제출 (지자체, ~'25.1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자체는 중기부에 특구 지정 신청 |
| 7 분과위원회 (중기부, '25.1~2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평가기준) 지역경제 기여도, 사업화 가능성, 제도혁신의 파급효과, 글로벌 진출전략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 상정 여부 검토 · (심의위 상정여부 결정)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, 분과위 의견 등을 참작하여 심의위원회 상정대상 특구 후보 지역 선정 |
| 8 신규 특구 지정 (중기부·지자체, '25.3~4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특구지정 심의) 심의위·특구위 심의·의결 후 지정 고시 |

※ 상기 절차에 따른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| 「글로벌 혁신특구」 후보지역 신청서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-|
| 신청기관 | | 단체장 | | |
| 담당부서 | | 담당자 | | 전화번호 |
| 신청내용 | | | | |
| 사업명칭 | 0000 글로벌 혁신특구 | | | |
| 사업위치 | | | | |
| 사업면적 | | | | |
| 사업내용 | 세부사업 요약 | | | |
| <p>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000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선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4년 00월 00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기관 : 신청인 : (인)</p> | | | | |
|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| | | | |

00000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서

2024년 00월 00일

지방자치단체명 : ○ ○ ○ ○ ○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개요 및 지정 필요성 | 00 |
| 1. 개요 | 00 |
| 2. 지정 필요성 | 00 |
| II. 지역혁신성장사업 · 지역전략산업 | 00 |
| 1. 육성 필요성 | 00 |
| 2. 지역혁신성자원의 활용 계획 | 00 |
| 3.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| 00 |
| 4. 글로벌 협력 계획 | 00 |
| III. 재정지원사업 추진 계획 | 00 |
| 1. 해외실증 및 해외실증 결과의 활용 방안 | 00 |
| 2. 해외인증 계획 | 00 |
| 3. 국제공동 실증R&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 | 00 |
| IV. 실증특례의 활용 계획 | 00 |
| 1. 현행 제도 및 개선 필요성 | 00 |
| 2. 해외 현황 | 00 |
| 3. 실증특례 활용 계획 | 00 |
| 4.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입장 | 00 |
| 5. 안전성 확보 방안 | 00 |
| V. 특구사업자 구성 | 00 |
| VI. 운영 체계 | 00 |
| VII. 기대 효과 | 00 |

I 개요 및 지정 필요성

1 개요

| 구분 | 주요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|--|--|---|--|--|-----|--|---|
| 목적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No</th> <th>위치</th> <th>면적(km²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합 계</td> <td>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No | 위치 | 면적(km ²) | 1 | | | 2 | | | 3 | | | 합 계 | | 0 |
| | | No | 위치 | 면적(km ²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 계 | | 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orange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작성Tip 특구지도(위치도 등) </div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위치·면적 | ▶ 총 : 00km ² - (00시) 00 일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정기간 | 2020.00.00 ~ 2024.00.00(4년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개요 | ▶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전략 산업 또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의 개요, 추진체계, 기대효과 등 요약 ※ 「지역특구법」 제2조제11호 “규제자유특구계획”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, 위치, 면적,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,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 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규제특례 개요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|--|
| 특구 지정 목적 | <p>▶ 지역특구법 제1조의 "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"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부각</p> |
| 지역혁신성장 자원 | <p>▶ 지역특구법 제2조제10호의 "혁신성장자원"의 활용 필요성</p> <p><i>"혁신성장자원"이란 '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,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·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·물적·사회제도적 자원'</i></p> |
| 신기술 | <p>▶ 지역특구법 제2조제9호의 "신기술"의 활용 필요성</p> <p><i>"신기술"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</i></p> |
| 실증특례 | <p>▶ 지역특구법 제2조16호의 "실증을 위한 특례"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규제의 면제 또는 유예 필요성</p> <p>▶ 실증특례 부여 요청 근거(지역특구법 제86조 ①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1.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2.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3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<p><i>*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(✓) 표시</i></p> |

II

지역혁신성장사업 · 지역전략산업

1

육성 필요성

3

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

III 재정지원사업 추진계획

1

해외실증 계획 및 해외실증 결과의 활용 방안

2

해외인증 계획

IV 실증특례의 활용 계획

1

현행 제도 및 개선 필요성

※ 현행 제도 상, 특례가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
(명확한 현행 규제가 없는 경우, 사전 지원제외 대상)

2

해외 현황

3

실증특례 활용 계획

V 특구사업자 구성

- ※ 지역특구법 제74조제1항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실증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구사업자 목록은 별지로 제출하되, 해당 목록은 '24.11월 서면평가 전까지 변경 가능

VI 운영 체계

VII 기대 효과

붙임 4**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****「규제자유특구」 후보특구 신청서**

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|
| 신청기관 | | | 단체장 | | |
| 담당부서 | | 담당자 | | 전화번호 | |
| 신청내용 | | | | | |
| 사업명칭 | 0000 규제자유특구 | | | | |
| 사업위치 | | | | | |
| 사업면적 | | | | | |
| 사업내용 | 세부사업 요약 | | | | |
| <p>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000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4년 00월 00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기관 : 신청인 : (인)</p> | | | | | |
|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| | | | | |

00000 규제자유특구 계획서

50페이지 내외 작성

2024년 00월 00일

지방자치단체명 : ○ ○ ○ ○ ○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개요 및 지정 필요성 | 00 |
| 1. 개요 | 00 |
| 2. 지정 필요성 | 00 |
| II. 지역혁신성장사업 · 지역전략산업 | 00 |
| 1. 육성 필요성 | 00 |
| 2. 지역혁신성자원의 활용 계획 | 00 |
| 3.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| 00 |
| 4. 지자체 간 협력 계획 (초광역 규제자유특구의 경우) | 00 |
| III. 재정지원사업 추진 계획 | 00 |
| 1. 1세부과제 | 00 |
| 2. 2세부과제 | 00 |
| 3. 3세부과제 | 00 |
| IV. 실증특례의 활용 계획 | 00 |
| 1. 현행 제도 및 개선 필요성 | 00 |
| 2. 해외 현황 | 00 |
| 3. 실증특례 활용 계획 | 00 |
| 4.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입장 | 00 |
| 5. 안전성 확보 방안 | 00 |
| V. 특구사업자 구성 계획 | 00 |
| VI. 운영 체계 | 00 |
| VII. 기대 효과 | 00 |

I 개요 및 지정 필요성

1 개요

| 구분 | 주요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|--|--|---|--|--|-----|--|---|
| 목적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No</th> <th>위치</th> <th>면적(km²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합 계</td> <td>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No | 위치 | 면적(km ²) | 1 | | | 2 | | | 3 | | | 합 계 | | 0 |
| | | No | 위치 | 면적(km ²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 계 | | 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작성Tip</p> <p>특구지도(위치도 등)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위치·면적 | <p>▶ 총 : 00km²</p> <p>- (00시) 00 일원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정기간 | 2020.00.00 ~ 2024.00.00(4년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개요 | <p>▶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전략 산업 또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의 개요, 추진체계, 기대효과 등 요약</p> <p>※ 「지역특구법」 제2조제11호 “규제자유특구계획”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, 위치, 면적,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,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 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.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규제특례 개요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|--|
| 특구 지정 목적 | <p>▶ 지역특구법 제1조의 "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"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부각</p> |
| 지역혁신성장 자원 | <p>▶ 지역특구법 제2조제10호의 "혁신성장자원"의 활용 필요성</p> <p><i>"혁신성장자원"이란 '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,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·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·물적·사회제도적 자원'</i></p> |
| 신기술 | <p>▶ 지역특구법 제2조제9호의 "신기술"의 활용 필요성</p> <p><i>"신기술"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</i></p> |
| 실증특례 | <p>▶ 지역특구법 제2조16호의 "실증을 위한 특례"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규제의 면제 또는 유예 필요성</p> <p>▶ 실증특례 부여 요청 근거(지역특구법 제86조 ①항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1.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2.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3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*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(✓) 표시</p> |

II

지역혁신성장사업 · 지역전략산업

1

육성 필요성

2

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

3

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

4

지자체 간 협력 계획 (초광역 규제자유특구의 경우)

III 재정지원사업 추진계획

1

1세부 과제

※ 세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들의 기술적 역량을 함께 제시

2

2세부 과제

※ 세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들의 기술적 역량을 함께 제시

3

3세부 과제

※ 세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들의 기술적 역량을 함께 제시

IV 실증특례의 활용 계획

1

현행 제도 및 개선 필요성

※ 현행 제도 상, 특례가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
(명확한 현행 규제가 없는 경우, 사전 지원제외 대상)

2

해외 현황

3

실증특례 활용 계획

5

안전성 확보 방안

V 특구사업자 구성 계획

※ '24.11월까지 추진하여야 할 특구사업자 공모 계획 중심으로 작성

VI 운영 체계

VII 기대 효과